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2202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7. 14.

주 문

1.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5,041,090원, 지방교육세 9,504,100원, 농어촌특별세 4,752,05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0,297,750원, 지방교육세 12,029,760원, 농어촌특별세 6,014,88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취득세등 감면

1)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2015. 12. 16.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순번에 따라 '제1토지', '제2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12. 16.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아울러 제1토지의 과세표준을 2,376,027,403원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통칭하여 '취득세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세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았고, 제2토지의 과세표준을 631,416,597원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를 근거로 취득세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신탁

원고는 2015. 12. 24. B과 사이에, 위탁자를 원고, 수탁자를 B, 수익자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신탁계약]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처분 및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위탁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 위반시

제16조 (처분대금 등 정산)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신탁보수
2. 제3호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3. 신탁계약 체결 전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채무
4. 수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 수탁자가 발행한 채권증서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지급

※ 계약의 내용

1. 신탁기간: 2015. 12. 24.~2035. 12. 23.

4. 채권증서금액: 우선수익자(소외 회사), 수익권증서금액(300억 원)

※ 특약사항

제2조 (여신거래 및 원금의 정의)

① 이 신탁계약서에서 '여신거래계약'이라 함은 우선수익자가 행하는 여신거래 일체에 관하여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이 신탁계약서에서 '원금'이라 함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지급보증, 매출채권 거래,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유가증권매입, 유가증권대여, 사채발행관련 채무, 기타 여신거래에서 발생되는 모든 채무 등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다. 원고의 취득세등 신고·납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B 앞으로 이전됨으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었던 취득세등을 추징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6. 1. 25. 피고에게 제1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등 합계 109,297,240원(취득세 95,041,090원, 지방교육세 9,504,100원, 농어촌특별세 4,752,050원), 제2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등 합계 29,045,150원(취득세 25,256,660원, 지방교육세 2,525,660원, 농어촌특별세 1,262,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16.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고,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의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등의 감면경정 및 납부세액 환급을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취득세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제2토지에 관한 2차 경정청구 및 피고의 2차 경정거부처분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추징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고, 이 사건 신탁은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2토지에 관한 취득세등의 감면 및 납부세액 환급을 다시 청구하였다(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

2) 이에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제2토지는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 소정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 원고가 제2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착공도 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차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2차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 사건 소송 및 후속 소송의 제기

원고는 2016. 8. 4.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아울러 2017. 4. 26. 2차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298호, 이하 '후속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현재 위 양 소송이 모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취득세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1)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제1토지를 B에게 신탁하였지만 제1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며 종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제2토지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제1토지 지상에는 종교시설을 건축하고 제2토지 지상에는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계획에 있었는데, 그 건축공사 규모가 상당하여 우선 종교시설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이므로, 종교시설 신축공사와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교시설 신축공사의 착공은 결국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의 착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제2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노인복지시설의 착공에 이르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2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취득세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제2토지를 B에게 신탁하였지만 그 신탁을 전후로 해서 제2토지를 계속해서 점유·사용하며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탁 사실만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 소정의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과 같은 취득세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제1토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본문 제1호 및 단서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추징사유로 확대하여 규정하였다. 이후 위 조문은 2010. 3. 31. 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가, 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단서 조항에서부터 '매각', '다른 용도 사용' 외에 '증여'도 추징사유로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입법경위를 살펴볼 때, 위 조항은 감면하였던 취득세의 추징사유를 점차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매각', '다른 용도 사용', '증여' 등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쉽사리 유추·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탁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이 위 규정상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려진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제1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신탁은 수탁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 추징규정상 '증여'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게다가 원고가 제1토지 지상에 종교시설을 건축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도 제1토지에 관해서는 신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제1토지가 원래의 용도, 즉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신탁은 위 추징규정상 '다른 용도로 사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이 사건 신탁이 위 추징규정상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입법경위에 더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매각'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부동산의 '매각'과는 달리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취득세 추징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제58조의3 제1항 등),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을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정의하고 있어 '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이전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매매와는 법률요건, 법률효과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상 '매각'을 그 일반적인 법률적 의미를 넘어 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다만, 수탁자인 B은 위탁자인 원고가 우선수익자와의 여신거래약정을 위반하거나, 신탁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담보가치 저감 등 환가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제1토지를 처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을 이용하여 제1토지를 처분하였거나 그로 인한 수익을 곧바로 얻으려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신탁이 실질적으로는 매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위 추징규정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 부동산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주되 위와 같은 감면의 취지에 반하여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부동산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이를 매각,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더 이상 종교시설로서의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에 위와 같은 혜택을 박탈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의 경우 원고가 신탁의 방법으로 제1토지의 소유권을 타인에 이전하기는 하였지만, 제1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관리하며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1토지에 대하여 부여된 취득세등 감면의 혜택을 박탈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제2토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추징사유 발생 여부

가) 제2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는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78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더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같은 법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제28조 등에서 그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징조항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 여부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점, 취득세 면제요건의 구비 여부나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7037 판결의 취지 참조), 종교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은 그 시설 운영주체나 자격, 사용대상 등이 전혀 다르고 취득세등의 감면 요건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면제조항 및 추징조항의 적용 여부는 종교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토지 지상에 있는 종교시설의 공사가 착공된 것을 두고 제2토지 지상에 건축예정인 노인복지시설의 공사가 실질적으로 착공되었다거나, 제2토지가 노인복지시설의 부지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031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4내지 9,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교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가 2013년경 체결한 것이고, 현재까지 일부 이루어진 공사도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불과한 점, ② 제2토지 지상에는 주식회사 [redacted]건설(위 각 공사의 수급인)의 현장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위 회사는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종교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위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그 밖에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한 이후 노인복지시설의 공사가 진척되도록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제2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2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취득세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78조 제2호 소정의 취득세등 추징사유 존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중 제2토지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이혜랑

판사 박상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별지 1.

목 록

1. 제1토지

가. [redacted]군 E 임 9,251㎡ 중 6,183㎡

나. [redacted]군 F 임 8,528㎡

다. [redacted]군 G 임 6,995㎡

라. [redacted]군 H 임 5,612㎡

마. [redacted]군 I 임 3,603㎡

바. [redacted]군 J 임 1,870㎡ 중 1,591.0247㎡

([redacted]군 J 임 1,870㎡의 지분 38020분의 32348)

사. [redacted]군 K㎡ 임 3,471㎡

아. [redacted]군 L 임 1,762㎡

2. 제2토지

가. [redacted]군 E 임 9,251㎡ 중 3,338㎡

나. [redacted]군 M 임 12,699㎡ 중 3,214㎡

([redacted]군 M 임 12,699㎡의 지분 12,699분의 3,214)

다. [redacted]군 N 임 5,735㎡ 중 1,363㎡

([redacted]군 N 임 5,735㎡의 지분 5735분의 1363)

라. [redacted]군 O 임 4,421㎡

마. [redacted]군 P 임 6,474㎡

바. [redacted]군 Q㎡ 임 215㎡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第1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第1號의 경우에는 3年)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第1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6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끝.